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도의회 의견 청취

행정구역조정에 관한 의회의견 청취

□ 청취 이유

- 정부의 '94 2단계 행정구역개편 추진지침에 따라 인접도간 행정 구역이 불합리하여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지역에 대하여 당해 주민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하고 실시 결과 경계조정을 찬성한 지역에 대하여 도간 경계조정을 추진코자 하는바,
-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도간 경계조정에 관한 도의회의 의견을 얻어 도간경계조정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에 건의코자 하는 것임.

※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 구하고자 하는 의회의견

경계조정 대상지역인 「충북 청원군 강외면 심증리」 → 충남 연기군으로 편입」과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 → 충북 청원군 부용면으로 편입」하는데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청원군 의회 의견 참고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사를 존중하고 생활 편의 도모를 위해 양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을 추진함이 타당하므로 찬성.

□ 추진상황 개요

◦ 추진 배경

- 도로, 교통, 통신의 발달과 대단위 지역개발등으로 실생활권과 행정권이 서로 달라 주민불편 초래
- '95년 지방자치제의 천연실시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지역 이기주의 팽배로 행정구역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 함.

◦ 경계조정 필요성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를 → 충남 연기군으로 편입

강외면 심중리는 충남 연기군과 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주민 활권이 충남지역이고, 행정기관 이용 불편등이 있어 주민 편의 도모와 동일 생활권 지역으로 조정 필요.

-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를 → 충북 청원군 부용면으로 편입

연기군 동면 갈산리는 청원군 부용면 소재지와 0.8km, 연기군 소재지와는 15km정도 위치하여 있어 모든 생활권이 부용면이며, 행정기관이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생활 편의도모나 행정추진의 효율성면에서 청원군으로 경계조정 필요.

◦ 주민의견조사 실시 결과

- 실시 일시 : '94. 10. 20일 (木)
- 실시 결과

실시 지역	대상 세대수	배부 세대수	회수 매수	개표 결과		
				찬성	반대	무효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	138	122	118	74 (63.2%)	43 (36.8%)	1
연기군 동면 갈산리	135	135	123	89 (73%)	33 (27%)	1

※ 주민의견조사 결과 찬성 50%이상인 지역에 대해

경제조정 추진

□ 도의 의견

◦ 충북 청원군 강외면 심중리 → 충남 연기군으로 편입

- 강외면 심중리는 충남 연기군과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청원군 외곽에 위치하여 행정기관의 이용불편은 물론 주민생활권이 인접한 연기군 조치원읍과 전동면이며,
 - 청원군청 24km, 강외면 8km
 - 연기군청 5km, 전동면 3km
- 오래전부터 연기군으로 편입을 희망해 왔고 주민의견조사 결과 연기군으로 편입을 63.2%나 찬성한 지역이며, 청원군 의회에서도 충남으로 편입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써
-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고 주민생활 편익도모와 행정기관의 이용및 행정의 효율성면에서도 충남 연기군으로 행정구역 조정이 타당.

◦ 충남 연기군 동면 갈산리 \Rightarrow 충북 청원군으로 편입

- 연기군 동면 갈산리는 청원군 부용면 소재지와 접한 지역으로 모든 생활권이 청원군 부용면에 두고 있고, 청원군 편입시 생활편리와 지형상으로도 충북지역에 깊숙히 위치하여 있고, 청주권역의 지역발전 기대감등 이유로 충북으로 편입을 오래 전부터 희망하여온 지역이며

【 청원군 부용면 0.8km, 연기군 동면 6km 】

- 주민의견조사 결과 73%의 앞도적 찬성과 도간 경계조정 필요성을 충남도에서 건의할 정도로 경계조정 필요성이 인정 되는 지역이므로
-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행정기관 이용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도간 경계조정을 위해 충북으로 편입이 타당 하다고 사료됨.